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합49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A

피고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조경구

변론 종결2021. 9. 1.

판결 선고2021.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D1) 체육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분묘 약 1,500평방미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77. 6. 20. 접수 제20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77. 6. 18.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 고양군 F 대 66평, G 전 690평, H 임야 16정 1단 8무보를 출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E은 피고에게 위 출연을 원인으로 하여 위 F 대 66평, H 임야 16정 1단 8무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77. 6. 20. 접수 제202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위 H 임야 16정 1단 8무보로부터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다.

라. E은 1981. 11. 3. 사망하였고, 아들인 원고가 그 권리의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E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면서 이를 청소년 수련관 신축 등 청소년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부동산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E 및 선조의 묘소가 있는 분묘 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증여 목적물의 사용목적을 지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다909 판결 참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는 급부로서의 일반요건, 즉 적법성, 가능성, 확정성의 내용을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증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증여의 의사와 대상을 명확히 하면서도 원고 주장의 부담에 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서면화하지 않은 점, 원고 주장의 부담은 '청소년 수련관 신축 등 청소년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용목적을 지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이행방법, 이행시기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내용을 확인한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피고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토지 중 분묘 부분에 관하여 분필 등이 되지 아니하여 그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성호

판사오택원

판사박예지

1)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D'의 오기로 보인다.